

수도권 이전기업 지원

본사가 수도권 소재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지원되는 보조금

■ 지원대상

- 지역조건 : 수도권 내 대상지역*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
- 규모조건 : 상시고용인 30인 이상 (이전 후에도 30인 이상)
- 업종조건 : 제조업, 정보통신산업, 지식서비스산업

■ 지원내용

- 입지보조금 : 토지매입가액 일부지원
- 설비보조금 : MOU체결일부터 투자완료일까지 투자하는 건설투자비, 기계장비구입비, 근로환경개선시설

지역	보조금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
수도권 인접지역	입지	-	-	토지매입가 9% 이내
	설비	투자금의 3% 이내	투자금의 5% 이내	투자금의 7% 이내

■ 신청시기

- 입지보조금 :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
- 설비보조금 :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

지방 산업단지 입주기업 조세특례 (지방세특례제한법)

대상	감면내용
산업단지 입주기업	취득세 신·증설 75%, 대수선 40% 감면 재산세 5년간 75% 감면

* 수도권 내 대상지역

- 서울특별시 전역
- 인천광역시
강화군, 옹진군, 서구 대곡동·불로동·마전동·금곡동·오류동·왕길동·당하동·원당동·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.
- 경기도
의정부시, 구리시, 남양주시(호평동, 평내동, 금곡동, 일패동, 이패동, 삼패동, 가운동, 수석동, 지금동 및 도농동인 해당한다)
하남시, 고양시, 수원시, 성남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시흥시[반월특수지역(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)은 제외한다]

신·증설기업 지원

아래 업종조건을 사업을 영위하려는 기업이 신·증설 시 지원되는 보조금

■ 지원대상

- 지역조건 :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
- 업종조건 : 제조업, 정보통신산업, 지식서비스산업
- 고용조건 :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% 이상

■ 지원내용

- 설비보조금 : MOU체결일부터 투자완료일까지 투자하는 건설투자비, 기계장비구입비,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비 일부 지원

지역	보조금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
수도권 인접지역	설비	투자금의 3% 이내	투자금의 5% 이내	투자금의 7% 이내

■ 신청시기

-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

청주시가 더 드리는 특별 인센티브

분야	지원 기준	지원 대상
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(차별화)	-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1,000억 이상 최고 150억 이내에서 추가 특별지원 가능	타시·도 기업 이전 또는 관내 공장 신·증설 인센티브 지원대상인 기업